

# 오목천역 더리브 입주자모집공고



## 정정 내용(단지외부 여건 중 기존 45페이지 학교관련 사항)

### 기존 내용

- 유아배치는 서부2권역(어린이집 보정 포함) 내 유아배치가 가능합니다.
- 초등학생은 오현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오현초등학교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검토 결과 보통교실 부족으로 학교 교육환경 악화가 예상됩니다.
- 중학교는 연신중학교에 우선 배정되며, 고등학교는 수원시 기존학교에 배치 가능합니다.
-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르며 입주시점 교육행정기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전 관련사항들을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변경 내용

- 초등학생 통학구역은 오현초등학교입니다.
- 중학교는 오목내중학교(영신중)에 해당됩니다.
- 고등학교는 수원시 기존학교에 배치 가능하며, 수원 관내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포함)는 경기도 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의거 평준화 지역 배정 방법을 따릅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7.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건분주택 관리를 대체하여 홈페이지 분양안내 **사이버 건분주택(<http://www.오목천역더리브.com>)**로 대체 운영 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9.01.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청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01.)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수도권(서울시,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2.09.01.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2019.09.13.시행)에 따라 수원시 원천동 42번 국도 준주거지역 일대 행정구역 변경대상 구역 내 거주자에 한하여, 본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의 지침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 전 거주자(행정구역 경계조정에 의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천동에서 용인시 영덕동으로 변경된 자)를 해당지역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본 아파트의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합니다.

- ※ 행정구역 변경 전 수원시 거주기간과 변경 이후 해당구역 내에서 연속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거주기간이 수원시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해당지역 우선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단, 용인시 영덕동에서 수원시 영통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구역 내 거주자는 행정구역 변경일로부터 해당지역(수원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기타지역 청약신청 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2020.07.24. 시행)에 따라 수원시 망포동 39-50번지 일대 행정구역 변경대상 구역 내 거주자에 한하여, 본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의 지침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 전 거주자(행정구역 경계조정에 의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 망포동에서 화성시 반정동으로 변경된 자)를 해당지역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본 아파트의 해당지역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합니다.

- ※ 행정구역 변경 전 수원시 거주기간과 변경 이후 해당구역 내에서 연속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거주기간이 수원시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해당지역 우선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단, 화성시 반정동에서 수원시 망포동, 신동, 곡반정동 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구역 내 거주자는 행정구역 변경일로부터 해당지역(수원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기타지역 청약신청 하여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정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 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등·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 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오목천역더리브.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의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수입인지 사이트:[www.r-revenuestamp.or.kr](http://www.r-revenuestamp.or.kr),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지족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1년	1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수원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며,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인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 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3.09.19)부터 1년 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

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09월 11일(월)	09월 12일(화)	09월 13일(수)	09월 19일(화)	10월 04일(수) ~ 10월 06(금)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개별통보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주체 방문접수</li>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9번길 17, 201호(오목천동)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건축과 2023-건축과-30105 (2023.08.3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19-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1층 3개동 총 201세대 중 일반분양 201세대

[특별공급 84세대(일반[기관추천] 20세대, 다자녀가구 14세대, 신혼부부 26세대, 노부모부양 6세대, 생애최초 1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02월 예정(단, 공사완료 시점에 따라 앞당겨질 수 있음.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3000442	01	084.9439A	84A	84.9439	26.0456	110.9895	53.4361	164.4256	26.0789	39	4	2	5	-	3	14	25	2
		02	084.2465B	84B	84.2465	26.2030	110.4495	52.9976	163.4471	25.8648	39	3	2	5	1	3	14	25	2
		03	084.1954C	84C	84.1954	26.7405	110.9359	52.9654	163.9013	25.8491	70	7	7	10	3	6	33	37	4
		04	084.9149D	84D	84.9149	28.1240	113.0389	53.4180	166.4569	26.0700	18	2	1	2	1	2	8	10	1
		05	084.9119E	84E	84.9119	27.3843	112.2962	53.4161	165.7123	26.0691	18	2	1	2	1	2	8	10	1
		06	084.9873F	84F	84.9873	24.7052	109.6925	53.4636	163.1561	26.0922	17	2	1	2	-	2	7	10	1
합계											201	20	14	26	6	18	84	117	11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별 라인별	층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금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10%)	2024.02.09	2024.06.09	2024.10.09	2025.01.09	2025.05.09	2025.08.09	입주지정일		
84A	39	101동 3호	2층	1	155,408,700	520,281,300	-	675,690,000	67,569,000	67,569,000	67,569,000	67,569,000	67,569,000	67,569,000	67,569,000	67,569,000	202,707,000	
			3층	1	162,393,800	543,666,200	-	706,060,000	70,606,000	70,606,000	70,606,000	70,606,000	70,606,000	70,606,000	70,606,000	70,606,000	70,606,000	211,818,000
			4층	1	165,013,500	552,436,500	-	717,450,000	71,745,000	71,745,000	71,745,000	71,745,000	71,745,000	71,745,000	71,745,000	71,745,000	71,745,000	215,235,000
			5층	1	167,633,200	561,206,800	-	728,840,000	72,884,000	72,884,000	72,884,000	72,884,000	72,884,000	72,884,000	72,884,000	72,884,000	72,884,000	218,652,000
			6층	1	170,252,900	569,977,100	-	740,230,000	74,023,000	74,023,000	74,023,000	74,023,000	74,023,000	74,023,000	74,023,000	74,023,000	74,023,000	222,069,000
			7~8층	2	173,394,700	580,495,300	-	753,890,000	75,389,000	75,389,000	75,389,000	75,389,000	75,389,000	75,389,000	75,389,000	75,389,000	75,389,000	226,167,000
			9~10층	2	174,618,300	584,591,700	-	759,210,000	75,921,000	75,921,000	75,921,000	75,921,000	75,921,000	75,921,000	75,921,000	75,921,000	75,921,000	227,763,000
			11~12층	2	175,839,600	588,680,400	-	764,520,000	76,452,000	76,452,000	76,452,000	76,452,000	76,452,000	76,452,000	76,452,000	76,452,000	76,452,000	229,356,000
			13~14층	2	177,060,900	592,769,100	-	769,830,000	76,983,000	76,983,000	76,983,000	76,983,000	76,983,000	76,983,000	76,983,000	76,983,000	76,983,000	230,949,000
			15~16층	2	178,284,500	596,865,500	-	775,150,000	77,515,000	77,515,000	77,515,000	77,515,000	77,515,000	77,515,000	77,515,000	77,515,000	77,515,000	232,545,000
			17~18층	2	179,505,800	600,954,200	-	780,460,000	78,046,000	78,046,000	78,046,000	78,046,000	78,046,000	78,046,000	78,046,000	78,046,000	78,046,000	234,138,000
			19~20층	2	180,729,400	605,050,600	-	785,780,000	78,578,000	78,578,000	78,578,000	78,578,000	78,578,000	78,578,000	78,578,000	78,578,000	78,578,000	235,734,000
			최상층	1	181,950,700	609,139,300	-	791,090,000	79,109,000	79,109,000	79,109,000	79,109,000	79,109,000	79,109,000	79,109,000	79,109,000	79,109,000	237,327,000
			2층	1	155,408,700	520,281,300	-	675,690,000	67,569,000	67,569,000	67,569,000	67,569,000	67,569,000	67,569,000	67,569,000	67,569,000	67,569,000	202,707,000
	3층	1	162,393,800	543,666,200	-	706,060,000	70,606,000	70,606,000	70,606,000	70,606,000	70,606,000	70,606,000	70,606,000	70,606,000	70,606,000	211,818,000		
	4층	1	165,013,500	552,436,500	-	717,450,000	71,745,000	71,745,000	71,745,000	71,745,000	71,745,000	71,745,000	71,745,000	71,745,000	71,745,000	215,235,000		
	5층	1	167,633,200	561,206,800	-	728,840,000	72,884,000	72,884,000	72,884,000	72,884,000	72,884,000	72,884,000	72,884,000	72,884,000	72,884,000	218,652,000		
	6층	1	170,252,900	569,977,100	-	740,230,000	74,023,000	74,023,000	74,023,000	74,023,000	74,023,000	74,023,000	74,023,000	74,023,000	74,023,000	222,069,000		
	7~8층	2	173,394,700	580,495,300	-	753,890,000	75,389,000	75,389,000	75,389,000	75,389,000	75,389,000	75,389,000	75,389,000	75,389,000	75,389,000	226,167,000		
	9~10층	2	174,618,300	584,591,700	-	759,210,000	75,921,000	75,921,000	75,921,000	75,921,000	75,921,000	75,921,000	75,921,000	75,921,000	75,921,000	227,763,000		
	11~12층	2	175,839,600	588,680,400	-	764,520,000	76,452,000	76,452,000	76,452,000	76,452,000	76,452,000	76,452,000	76,452,000	76,452,000	76,452,000	229,356,000		
	13~14층	2	177,060,900	592,769,100	-	769,830,000	76,983,000	76,983,000	76,983,000	76,983,000	76,983,000	76,983,000	76,983,000	76,983,000	76,983,000	230,949,000		
	15~16층	2	178,284,500	596,865,500	-	775,150,000	77,515,000	77,515,000	77,515,000	77,515,000	77,515,000	77,515,000	77,515,000	77,515,000	77,515,000	232,545,000		
	17~18층	2	179,505,800	600,954,200	-	780,460,000	78,046,000	78,046,000	78,046,000	78,046,000	78,046,000	78,046,000	78,046,000	78,046,000	78,046,000	234,138,000		
	19층	1	180,729,400	605,050,600	-	785,780,000	78,578,000	78,578,000	78,578,000	78,578,000	78,578,000	78,578,000	78,578,000	78,578,000	78,578,000	235,734,000		
	최상층	1	181,950,700	609,139,300	-	791,090,000	79,109,000	79,109,000	79,109,000	79,109,000	79,109,000	79,109,000	79,109,000	79,109,000	79,109,000	237,327,000		
	84B	39	101동 2호	2층	1	153,145,500	512,704,500	-	665,850,000	66,585,000	66,585,000	66,585,000	66,585,000	66,585,000	66,585,000	66,585,000	66,585,000	199,755,000
				3층	1	160,027,100	535,742,900	-	695,770,000	69,577,000	69,577,000	69,577,000	69,577,000	69,577,000	69,577,000	69,577,000	69,577,000	208,731,000
4층				1	162,607,700	544,382,300	-	706,990,000	70,699,000	70,699,000	70,699,000	70,699,000	70,699,000	70,699,000	70,699,000	70,699,000	212,097,000	
5층				1	165,190,600	553,029,400	-	718,220,000	71,822,000	71,822,000	71,822,000	71,822,000	71,822,000	71,822,000	71,822,000	71,822,000	215,466,000	
6층				1	167,771,200	561,668,800	-	729,440,000	72,944,000	72,944,000	72,944,000	72,944,000	72,944,000	72,944,000	72,944,000	72,944,000	218,832,000	
7~8층				2	170,867,000	572,033,000	-	742,900,000	74,290,000	74,290,000	74,290,000	74,290,000	74,290,000	74,290,000	74,290,000	74,290,000	222,870,000	
9~10층				2	172,072,200	576,067,800	-	748,140,000	74,814,000	74,814,000	74,814,000	74,814,000	74,814,000	74,814,000	74,814,000	74,814,000	224,442,000	
11~12층				2	173,277,400	580,102,600	-	753,380,000	75,338,000	75,338,000	75,338,000	75,338,000	75,338,000	75,338,000	75,338,000	75,338,000	226,014,000	
13~14층				2	174,480,300	584,129,700	-	758,610,000	75,861,000	75,861,000	75,861,000	75,861,000	75,861,000	75,861,000	75,861,000	75,861,000	227,583,000	
15~16층				2	175,685,500	588,164,500	-	763,850,000	76,385,000	76,385,000	76,385,000	76,385,000	76,385,000	76,385,000	76,385,000	76,385,000	229,155,000	
17~18층				2	176,890,700	592,199,300	-	769,090,000	76,909,000	76,909,000	76,909,000	76,909,000	76,909,000	76,909,000	76,909,000	76,909,000	230,727,000	
19~20층				2	178,095,900	596,234,100	-	774,330,000	77,433,000	77,433,000	77,433,000	77,433,000	77,433,000	77,433,000	77,433,000	77,433,000	232,299,000	
최상층				1	179,298,800	600,261,200	-	779,560,000	77,956,000	77,956,000	77,956,000	77,956,000	77,956,000	77,956,000	77,956,000	77,956,000	77,956,000	233,868,000
2층				1	153,145,500	512,704,500	-	665,850,000	66,585,000	66,585,000	66,585,000	66,585,000	66,585,000	66,585,000	66,585,000	66,585,000	66,585,000	199,755,000
3층		1	160,027,100	535,742,900	-	695,770,000	69,577,000	69,577,000	69,577,000	69,577,000	69,577,000	69,577,000	69,577,000	69,577,000	69,577,000	208,731,000		
4층		1	162,607,700	544,382,300	-	706,990,000	70,699,000	70,699,000	70,699,000	70,699,000	70,699,000	70,699,000	70,699,000	70,699,000	70,699,000	212,097,000		
5층		1	165,190,600	553,029,400	-	718,220,000	71,822,000	71,822,000	71,822,000	71,822,000	71,822,000	71,822,000	71,822,000	71,822,000	71,822,000	215,466,000		
6층		1	167,771,200	561,668,800	-	729,440,000	72,944,000	72,944,000	72,944,000	72,944,000	72,944,000	72,944,000	72,944,000	72,944,000	72,944,000	218,832,000		
7~8층		2	170,867,000	572,033,000	-	742,900,000	74,290,000	74,290,000	74,290,000	74,290,000	74,290,000	74,290,000	74,290,000	74,290,000	74,290,000	222,870,000		
9~10층		2	172,072,200	576,067,800	-	748,140,000	74,814,000	74,814,000	74,814,000	74,814,000	74,814,000	74,814,000	74,814,000	74,814,000	74,814,000	224,442,000		
11~12층		2	173,277,400	580,102,600	-	753,380,000	75,338,000	75,338,000	75,338,000	75,338,000	75,338,000	75,338,000	75,338,000	75,338,000	75,338,000	226,014,000		
13~14층		2	174,480,300	584,129,700	-	758,610,000	75,861,000	75,861,000	75,861,000	75,861,000	75,861,000	75,861,000	75,861,000	75,861,000	75,861,000	227,583,000		



			6층	1	176,778,000	591,822,000	-	768,600,000	76,860,000	76,860,000	76,860,000	76,860,000	76,860,000	76,860,000	76,860,000	230,580,000		
			7~8층	2	180,041,700	602,748,300	-	782,790,000	78,279,000	78,279,000	78,279,000	78,279,000	78,279,000	78,279,000	78,279,000	78,279,000	234,837,000	
			9~10층	2	181,311,300	606,998,700	-	788,310,000	78,831,000	78,831,000	78,831,000	78,831,000	78,831,000	78,831,000	78,831,000	78,831,000	236,493,000	
			11~12층	2	182,580,900	611,249,100	-	793,830,000	79,383,000	79,383,000	79,383,000	79,383,000	79,383,000	79,383,000	79,383,000	79,383,000	238,149,000	
			13~14층	2	183,850,500	615,499,500	-	799,350,000	79,935,000	79,935,000	79,935,000	79,935,000	79,935,000	79,935,000	79,935,000	79,935,000	239,805,000	
			15~16층	2	185,120,100	619,749,900	-	804,870,000	80,487,000	80,487,000	80,487,000	80,487,000	80,487,000	80,487,000	80,487,000	80,487,000	241,461,000	
			17~18층	2	186,387,400	623,992,600	-	810,380,000	81,038,000	81,038,000	81,038,000	81,038,000	81,038,000	81,038,000	81,038,000	81,038,000	243,114,000	
			최상층	1	187,657,000	628,243,000	-	815,900,000	81,590,000	81,590,000	81,590,000	81,590,000	81,590,000	81,590,000	81,590,000	81,590,000	81,590,000	244,770,000
84E	18	103동 2호	2층	1	160,307,700	536,682,300	-	696,990,000	69,699,000	69,699,000	69,699,000	69,699,000	69,699,000	69,699,000	69,699,000	209,097,000		
			3층	1	167,511,300	560,798,700	-	728,310,000	72,831,000	72,831,000	72,831,000	72,831,000	72,831,000	72,831,000	72,831,000	218,493,000		
			4층	1	170,213,800	569,846,200	-	740,060,000	74,006,000	74,006,000	74,006,000	74,006,000	74,006,000	74,006,000	74,006,000	222,018,000		
			5층	1	172,916,300	578,893,700	-	751,810,000	75,181,000	75,181,000	75,181,000	75,181,000	75,181,000	75,181,000	75,181,000	75,181,000	225,543,000	
			6층	1	175,616,500	587,933,500	-	763,550,000	76,355,000	76,355,000	76,355,000	76,355,000	76,355,000	76,355,000	76,355,000	76,355,000	229,065,000	
			7~8층	2	178,859,500	598,790,500	-	777,650,000	77,765,000	77,765,000	77,765,000	77,765,000	77,765,000	77,765,000	77,765,000	77,765,000	233,295,000	
			9~10층	2	180,119,900	603,010,100	-	783,130,000	78,313,000	78,313,000	78,313,000	78,313,000	78,313,000	78,313,000	78,313,000	78,313,000	234,939,000	
			11~12층	2	181,380,300	607,229,700	-	788,610,000	78,861,000	78,861,000	78,861,000	78,861,000	78,861,000	78,861,000	78,861,000	78,861,000	236,583,000	
			13~14층	2	182,643,000	611,457,000	-	794,100,000	79,410,000	79,410,000	79,410,000	79,410,000	79,410,000	79,410,000	79,410,000	79,410,000	238,230,000	
			15~16층	2	183,903,400	615,676,600	-	799,580,000	79,958,000	79,958,000	79,958,000	79,958,000	79,958,000	79,958,000	79,958,000	79,958,000	239,874,000	
			17~18층	2	185,163,800	619,896,200	-	805,060,000	80,506,000	80,506,000	80,506,000	80,506,000	80,506,000	80,506,000	80,506,000	80,506,000	241,518,000	
			최상층	1	186,424,200	624,115,800	-	810,540,000	81,054,000	81,054,000	81,054,000	81,054,000	81,054,000	81,054,000	81,054,000	81,054,000	81,054,000	243,162,000
84F	17	103동 3호	3층	1	169,891,800	568,768,200	-	738,660,000	73,866,000	73,866,000	73,866,000	73,866,000	73,866,000	73,866,000	73,866,000	221,598,000		
			4층	1	172,631,100	577,938,900	-	750,570,000	75,057,000	75,057,000	75,057,000	75,057,000	75,057,000	75,057,000	75,057,000	225,171,000		
			5층	1	175,372,700	587,117,300	-	762,490,000	76,249,000	76,249,000	76,249,000	76,249,000	76,249,000	76,249,000	76,249,000	76,249,000	228,747,000	
			6층	1	178,112,000	596,288,000	-	774,400,000	77,440,000	77,440,000	77,440,000	77,440,000	77,440,000	77,440,000	77,440,000	77,440,000	232,320,000	
			7~8층	2	181,401,000	607,299,000	-	788,700,000	78,870,000	78,870,000	78,870,000	78,870,000	78,870,000	78,870,000	78,870,000	78,870,000	236,610,000	
			9~10층	2	182,679,800	611,580,200	-	794,260,000	79,426,000	79,426,000	79,426,000	79,426,000	79,426,000	79,426,000	79,426,000	79,426,000	238,278,000	
			11~12층	2	183,956,300	615,853,700	-	799,810,000	79,981,000	79,981,000	79,981,000	79,981,000	79,981,000	79,981,000	79,981,000	79,981,000	239,943,000	
			13~14층	2	185,235,100	620,134,900	-	805,370,000	80,537,000	80,537,000	80,537,000	80,537,000	80,537,000	80,537,000	80,537,000	80,537,000	241,611,000	
			15~16층	2	186,513,900	624,416,100	-	810,930,000	81,093,000	81,093,000	81,093,000	81,093,000	81,093,000	81,093,000	81,093,000	81,093,000	81,093,000	243,279,000
			17~18층	2	187,792,700	628,697,300	-	816,490,000	81,649,000	81,649,000	81,649,000	81,649,000	81,649,000	81,649,000	81,649,000	81,649,000	81,649,000	244,947,000
			최상층	1	189,071,500	632,978,500	-	822,050,000	82,205,000	82,205,000	82,205,000	82,205,000	82,205,000	82,205,000	82,205,000	82,205,000	82,205,000	246,615,000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홈페이지(<http://www.오목천역더리브.com>)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084.9439A	084.2465B	084.1954C	084.9149D	084.9119E	084.9873F
홈페이지 등 약식 표기	84A	84B	84C	84D	84E	84F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득한 아파트(공동주택)입니다.

- 주택형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 가를 산정함)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은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추가선택 유상오피션)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람)
-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추가선택 유상옵션)계약을 체결한 세대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의 중도금, 잔금(미납이 있을 경우 연체료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본 아파트의 건축 공사가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고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 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 소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금융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임) 단, 대출 미 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을 초과할때에는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사업주체가 대납했던 중도금대출 이자를 사 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부적격 사유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일정에 맞 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애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사본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세대)

구 분 (약식 표기)		84A	84B	84C	84D	84E	84F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	1	1	-	1	4
	장기복무 제대군인	1	-	1	-	1	-	3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	1	-	-	-	2
	중소기업 근로자	1	-	1	-	-	-	2
	장애인	-	3	3	1	1	1	9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거주자 (50%)	1	1	4	1	1	1	9
	수도권(서울,인천)거주자 (50%)	1	1	3	-	-	-	5
신혼부부 특별공급		5	5	10	2	2	2	2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	3	1	1	-	6
생애최초 특별공급		3	3	6	2	2	2	18
합 계		14	14	33	8	8	7	84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II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li> </ul>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월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 <table border="1" data-bbox="264 1053 2105 1236">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li> </ul>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2호의2(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3호(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제4호(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5호(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6호(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처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18호(2023.2.28.)] 제5조에 의거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 50%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기도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합니다. 단, 경기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1년

- 이상 계속 거주자(2022.09.01.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 에게 우선공급하며, 경기도 거주자가 우선공급(50%)에서 낙첨된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때에 지역우선공 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우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역 우선 공급에서 낙첨된 자가 기타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는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18호(2023.2.28.)]에 따릅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표(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계약 체결 전 서류 접수 시 배점표에 자필 작성 및 점수 기재)

평가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우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우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우주택자이어야 하며, 우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우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우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우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우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우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2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우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우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우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우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하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09.0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	----	--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509,453원~ 7,811,342원	7,622,057원~ 9,146,467원	8,040,493원~ 9,648,590원	8,701,640원~ 10,441,967원	9,362,787원~ 11,235,343원	10,023,934원~ 12,028,72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509,453원~ 9,113,233원	7,622,057원~ 10,670,878원	8,040,493원~ 11,256,689원	8,701,640원~ 12,182,295원	9,362,787원~ 13,107,900원	10,023,934원~ 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811,343원~ 10,415,123원	9,146,468원~ 12,195,290원	9,648,591원~ 12,864,787원	10,441,968원~ 13,922,622원	11,235,344원~ 14,980,458원	12,028,721원~ 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113,234원~	10,670,879원~	11,256,690원~	12,182,296원~	13,107,901원~	14,033,50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교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자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li> <li>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빌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부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6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18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임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09.0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462,289원~10,415,123원	9,908,674원~12,195,290원	10,452,641원~12,864,787원	11,312,132원~13,922,622원	12,171,623원~14,980,458원	13,031,114원~16,038,293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160%이하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1인 가구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의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의원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로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 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



	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청약전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에서 과거당첨사실 조회 요망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행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60㎡ 초과 ~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b> : 가정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정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li> <li>▪ <b>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b> (가정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li> </ul>

▪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관련)

구 분	수원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한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니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함)</li> </ul>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li> <li>■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li> <li>■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li> <li>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li> <li>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li> <li>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li> <li>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li> </ul> </li> <li>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li> </ol> </li> <li>■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li> <li>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li> <li>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li> <li>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li> </ul> </li> <li>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li> <li>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무부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li> </ul> </li> </ol> </li> </ul>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 가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이하 같음)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 ③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b>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점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ul>
<b>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정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정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정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정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ul> </li> <li>*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li> <li>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li> </ol> </li> <li>• 동일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신청자가 수원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서울/인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점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ul> </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청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청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청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주체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청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사업주체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청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청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청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청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청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청자로 판명된 경우 당청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ul>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3.09.11(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방문 접수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 앱</li> <li>• 사업주체 방문 접수 안내 (<a href="http://www.오목천역더리브.com">http://www.오목천역더리브.com</a>)</li> <li>-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9번길 17, 201호(오목천동)</li> </ul>
일반공급	1순위	2023.09.12(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 앱</li> </ul>
	2순위	2023.09.13(수)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li> </ul>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8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

- 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사업주체 방문 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③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li> </ul>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b>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b>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23.09.19.(화)</li> <li>• 확인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li> <li>- 2023.10.04.(수)~ 23.10.06.(금) (10:00~16:00)</li> </ul>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b>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소</li> <li>-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9번길 17, 201호(오목천동)</li> </ul>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사업주체 방문(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오목천역더리브.com](http://www.오목천역더리브.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쏠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09.19 (화) ~ 2023.09.28 (목)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접속 → <b>청약당첨조회</b> → <b>당첨조회(최근10일)</b></li> <li>- 스마트폰앱 접속 → <b>청약당첨조회</b> → <b>당첨조회(10일간)</b></li> <li>※ <b>당첨조회(10일)</b>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gt;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gt; <b>APT당첨사실조회</b>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li> </ul>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3.09.19(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구 분	자격서류제출
대 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당첨자
제출기간	2023.09.21.(목) ~ 2023.09.26.(화) 7일간 / 10:00~17:00
제출방법	빠른 등기 우편 제출
제출장소	사업주체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9번길 17, 201호(오목천동)

- 유의사항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대 대리 신청자로 봄)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 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사업주체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되지 않으며, 미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됩니다. 또한,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동호추천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특별공급 예비 및 일반공급 예비)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사업주체에서 일정기간 보관후 파기함.

■ 표1.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공통서류와 당첨 유형별 필수서류 및 해당 추가서류 포함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대상	서류 발급기준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본인	· 사업주체 내 비치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익일부터 발급 가능(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 청약통장 가입 은행 또는 주택청약서비스 '청약Home'(www.applyhome.co.kr)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국가유공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신청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 <b>전체 포함</b> ”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 <b>상세</b> ”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 <b>전체 포함</b> ”으로 발급
	○	군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본인	· 10년 이상(또는 25년)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정기준표		· 사업주체 내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 <b>전체 포함</b> ”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당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사업주체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특별공급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Fax 수신 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청약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등기열람/발급>부동산>“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사업주체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해당자		· 사업주체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사업주체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에 해당하므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 기록 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직계비속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이 부양가족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세대원 전원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발급처 : 해당 직장, 세우서)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Fax 수신 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청약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등기열람/발급>부동산>“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 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해당자	· 사업주체 내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당당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사업주체 비치)
일반공급 (가점제)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 30세 미만 청약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출입국사실증명서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 * 만30세미만 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이상 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출입국사실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 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입증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영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영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영업사정 불인정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영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출생년도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 지정으로 발급)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축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공시가격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공급신청자 (본인)	· 용도: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위임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함.
	○	위임장	공급신청자 (본인)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사업주체 내 비치)
대리인 제출 시 추가 서류 (본인 외 제3자)	○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인장(서명)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 등록 또는 변경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모두 포함하여 표기되도록 발급하시기 바람.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 서류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하시기 바람.
- ※ 특별공급 신청당일 사업주체 내 접수(현장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고령자, 장애인 등 해당 특별공급 서류를 완비한 공급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대리인 접수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 당첨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표2.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금년도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표준(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신고서상 금액 (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사업주체에 비치) ② 사실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접수장소 - 세무서

-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은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 세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내역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해당직장 - 세무서

■ 표4.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a href="http://www.iros.go.kr">www.iros.go.kr</a> ) ③ 주민센터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 주민센터 ③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a href="http://www.iros.go.kr">www.iros.go.kr</a>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단, 최저가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최저가점과 동일한 점수를 가진 신청자 모두가 당첨된 경우에만 정당당첨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동일 점수 신청자 중 일부는 당첨되고 일부는 낙첨(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당당첨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Ⅶ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3.10.04.(수) ~ 2023.10.06.(금) 3일간 10:00~16:00	사업주체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9번길 17, 201호(오목천동)

-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분양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대상	서류 발급기준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계약시		○	자격검증서류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당첨자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통지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단, 전자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필요)
	○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용(※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계약금 입금증	-	• 사업주체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		인지세 (전자수입인지)	-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 내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 사항 (본인 외 모두 제3자)		○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	위임장	-	• 사업주체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단, 전자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필요)

-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의 인감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전자수입인지(인지세) 미지참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신한은행	100-036-147244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입금 예시 :101동 1001호 당첨자가 홀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101홀길동” 기재)후 입금증은 계약 시 제출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상기 해당 회차별 납부일에 따라 순서대로 납부하여야 하며,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소멸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환불시기 방법 등은 추후 통보)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래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부적격 당초 소멸기간 내(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내용이 확인될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 포함)의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분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와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이 취소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 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지정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화와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1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자가 있으면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 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안의 토지(아파트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 계약의 계약 해제를 사업주체에게 주장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 계약자 대출안내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이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 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의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특히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기관은 사업주체가 선정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사업주체)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사와 분양상당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당(전화상담 포함)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관련 내용은 사업주체가 금융기관을 알선해 드리며, 대출 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단,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이용치 않을 경우 사업주체의 이자 대납(이하 “이자후불제” 등)에 대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중도금 이자후불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중도금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및 사업주체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따라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을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 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일입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 예비당첨자 추천 및 계약안내

- 예비당첨자의 사전서류 검수일정, 동·호수 추천 및 계약일시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통지된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천 및 계약일시에 불참 등으로 발생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의거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일 이전(입주 개시 45일 전까지 실시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점검 예정일자는 추후 통보함)에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에 통보합니다.  
사전점검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등

#### ■ 입주예정일 : 2026년 02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사완료 시점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보다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예정일은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집회실, 독서실), 주민 체육시설, 입주자 회의실, 주차관리실,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등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됨(주택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함)

## Ⅷ 발코니 확장 선택

### ■ 발코니 확장

####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 시	입주지정일	
전주택형	16,500,000	1,650,000	14,850,000	

#### 2)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신한은행	100-036-147283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101홍길동'으로 기재)
-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3)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발코니 확장 등) 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드레스룸(가구도어+시스템가구), 비데(욕실2), 아트월 타일 등이 포함됩니다. (비확장 선택 시 미포함)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본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 비용 과 추가 설치 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확장 공간 제외 위치는 사업주체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별도로 통지하는 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통지한 기간 이후에는 자재 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 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른 추가 단열공사 시 비확장 세대측에 우선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며, 이에 따라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및 실내공간 등 일부 구간의 바닥, 벽체, 천장 일부가 돌출, 단차, 높이 및 폭 축소,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내부 공간 축소 등 사용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 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인접 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제기 불가)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부층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배수를 위한 배수관이 하부층 세대 천장 속 또는 벽면 등에 설치되거나, 외부에 배수를 위한 선홍통이 설치되어 소음, 누수 등의 하자발생 및 미관저해, 벽체 또는 천장면 돌출, 발코니확장 공간의 축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상·하부층 및 인접 세대의 발코니 미확장 시 현장여건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해당 확장 세대 내 바닥, 벽체 및 천장 등에 단열재가 설치되며, 발코니 및 실내 공간 등 일부 구간의 바닥, 벽체 및 천장의 마감면의 돌출 및 단차발생, 결로발생, 천장고 높이 감소, 커튼박스 및 등박스 크기 및 깊이 감소, 설비 설치 불가 등이 발생 되거나 발생할 수 있어 사용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설치된 단열재를 입주후 임의제거 및 변경을 할 수 없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 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 습도 등 생활환경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시

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 시 외부 단창이 설치되며, 창호 형태에 따라 일반난간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발코니 창호를 설치하여도 내·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의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 및 손해를 입힐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고 모든 책임은 해당 세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IX**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추가선택품목 선택 관련 품목별 내용 및 유의사항을 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과 관련된 분쟁, 다툼 그리고 공사 중 또는 입주 후 민원이나 이의제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현관 중문**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적용 주택형	구성 내용		공급금액	계약시(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84A, 84B	유상	AL금속프레임(다크그레이) + 브론즈 불투명 패턴유리	1,760,000	176,000	1,584,000	사이버 견본주택 84E타입 설치
		기본	현관장 벽체 설치	-	-	-	
	84C	유상	AL금속프레임(실버) + 화이트 불투명 패턴유리	1,760,000	176,000	1,584,000	사이버 견본주택 84C타입 설치
		기본	현관장 벽체 설치	-	-	-	
	84D, 84E, 84F	유상	AL금속프레임(다크그레이) + 브론즈 불투명 패턴유리	1,650,000	165,000	1,485,000	사이버 견본주택 84E타입 설치
		기본	현관장 벽체 설치	-	-	-	

**※ 현관 중문 관련 유의사항**

- 현관 중문은 주택형별의 구조 및 현관크기에 따라 중문의 개폐타입 및 사이즈, 색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평면도 등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오목천역더리브.com>)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은 동급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벽과 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의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선택 시 주택형에 따라 디딤판의 크기, 디자인, 위치는 미선택 시와 상이할 수 있으며, 현관 디딤판과 마루 사이에 재료분리대가 설치됩니다.
- 현관중문 선택 시 주택형에 따라 벽체의 길이 또는 가구의 크기, 디자인, 위치는 미선택 시와 상이할 수 있으며, 현관장의 길이와 구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선택 시 주택형에 따라 신발장의 크기, 디자인, 위치는 미선택 시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슬라이딩 도어 특성상 개폐 시 벽체에서 돌출되며, 돌출 사이즈는 타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거실 조명 업그레이드**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적용 주택형	구성 내용		공급금액	계약시(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거실 조명	전주택형	유상	라인형 직/간접 조명 + 디밍(밝기 단계 조절)	2,090,000	209,000	1,881,000	사이버 견본주택설치
		기본	사각 직부등	-	-	-	

※ 거실 조명 추가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거실 라인형 직/간접 조명 유상옵션 선택 시 조명기기의 이음매가 노출될 수 있으며, 조명기기의 측면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라인형 직/간접 조명 유상옵션 선택 시 거실 네트워크 스위치를 통해 밝기 조절(디밍)이 가능하며, 미선택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거실 및 우물천장 길이에 따라 옵션형 조명의 길이 및 이음매의 위치가 타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조명기기의 램프 색온도는 옵션 선택여부와 상관없이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오목천역더리브.com>)에 설치된 제품기준 색온도로 설치되며, 그 외 디테일, 하드웨어 등의 사양은 동급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가전

품목	적용 주택형	내용		공급금액	계약시(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냉장고장 / 키친핏 가전옵션	84A, 84B	유상	냉장고장 + 키친 수납장(인출 ACC) + [삼성전자] 1도어 키친핏 냉장고 (RR40C78995AP) + 1도어 키친핏 냉동고 (RZ34C78965AP) + 1도어 키친핏 김치냉장고 (RQ34C78945AP)	5,280,000	528,000	4,752,000	- 냉장고 색상 : 코타화이트	
		기본	냉장고 설치공간	-	-	-	냉장고설치공간 후면 기본 도배 마감	
	84C	유상	냉장고장 + 유리 장식장 +[삼성전자] 1도어 키친핏 냉장고 (RR40C78995AP) + 1도어 키친핏 냉동고 (RZ34C78965AP) + 1도어 키친핏 김치냉장고 (RQ34C78945AP)	7,590,000	759,000	6,831,000	- 냉장고 색상 : 코타화이트	
		기본	냉장고 설치공간+수납장	-	-	-	냉장고설치공간 후면 기본 도배 마감	
	84D, 84E, 84F	유상	냉장고장 + 키친 수납장(인출 ACC) + [삼성전자] 1도어 키친핏 냉장고 (RR40C78995AP) + 1도어 키친핏 냉동고 (RZ34C78965AP) + 1도어 키친핏 김치냉장고 (RQ34C78945AP)	5,500,000	550,000	4,950,000	- 냉장고 색상 : 코타화이트	
		기본	냉장고 설치공간	-	-	-	냉장고설치공간 후면 기본 도배 마감	
	주방가전	84A, 84B	유상	후라이팬 수납 ACC + [SK매직] 3구 인덕션 쿡탑 (IHRBF32C) [SK매직] ALL in One 전기오븐 (EONB440SA) [삼성전자] 빌트인 식기세척기 (DW60T7065SS)	3,300,000	330,000	2,970,000	식기세척기 전면부 주방 하부장 동일 가구 패널 마감
			기본	[하츠] 3구 가스 쿡탑 (SSGC-3605SABH)	-	-	-	가전 미설치 시 가구 하부장 시공
84C		유상	후라이팬 수납 ACC + [SK매직] 3구 인덕션 쿡탑 (IHRBF32C) [SK매직] ALL in One 전기오븐 (EONB440SA) [삼성전자] 빌트인 식기세척기 (DW60T7065SS)	3,850,000	385,000	3,465,000	식기세척기 전면부 주방 하부장 동일 가구 패널 마감	
		기본	[하츠] 3구 가스 쿡탑 (SSGC-3605SABH)	-	-	-	가전 미설치 시 가구 하부장 시공	
84D, 84E, 84F		유상	후라이팬 수납 ACC + [SK매직] 3구 인덕션 쿡탑 (IHRBF32C) [SK매직] ALL in One 전기오븐 (EONB440SA) [삼성전자] 빌트인 식기세척기 (DW60T7065SS)	3,410,000	341,000	3,069,000	식기세척기 전면부 주방 하부장 동일 가구 패널 마감	
		기본	[하츠] 3구 가스 쿡탑 (SSGC-3605SABH)	-	-	-	가전 미설치 시 가구 하부장 시공	

※ 가전제품 추가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삼성 비스포크 가전제품은 B2B 전용 모델이며, 상기 표기된 바와 같이 주택형별로 맞춤 구성된 세트로만 판매하고 있으므로 상품의 조합 및 설치위치, 모델, 디자인, 색상은 주택형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개별선택 및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에 따라 설치되는 가전기기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쿡탑, 오븐, 식기세척기 등)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기기 및 가구 등이 제공되는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인테리어 통합 패키지 옵션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가전제품 품목은 선택에 따라 미설치되는 기본제공 가전, 가구 등의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제품 성능 개선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은 제품의 단종, 변경, 성능향상 등 제조사의 사정으로 인해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 품목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됩니다.
- 가전제품의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기기 품목은 주택형별의 구조 및 평면 여건에 따라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옵션은 냉동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패키지로 구성되며, 냉장고의 배치순서, 문 열림 방향, 도어 마감 재질 및 색상 등을 계약자가 임의로 선택 및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 설치 전 공급을 위한 매립호스가 설치되며, 이에 대한 시공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옵션 미선택 시 냉장고,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등 가전 옵션 위치에는 가전 설치 공간 또는 가구 여닫이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옵션 선택 시 빌트인 냉장고의 문 열림 방향은 동일 주택형 일지라도 평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선택 및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옵션 미선택 시 빌트인 냉장고의 상부장이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오목천역더리브.com>) 내 안내와 같이 설치되며, 일반 냉장고 설치 시 냉장고장 보다 돌출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전기오븐 미선택 시 후라이팬 수납공간(ACC)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 전면은 하부장 도어 동일 가구 패널로 마감됩니다.
- 식기세척기 선택 시 급수/배수는 싱크대 급수구/배수구에 연결되며, 배관 구조상 동시 사용 시 급수/배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쿡탑 미선택 시 3구 가스 쿡탑이 설치됩니다.

■ 주방특화 (주방 스타일업)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적용 주택형	내용	공급금액	계약시(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주방 스타일업	84A, 84B	유상	유리 플랩 상부장 + 가구FIX 판넬 + 대형 아일랜드 하부장 + 엔지니어드스톤(벽,상판,아일랜드) + 휴대폰 충전 USB 콘센트	7,260,000	726,000	6,534,000	
		기본	여닫이 상부장 + 벽지 마감 + 일반 아일랜드 하부장 + 타일(벽:300x600) + MMA(상판,아일랜드)	-	-	-	
	84C	유상	플랩 상부장 + 대형 아일랜드 하부장 + 엔지니어드스톤(벽,상판,아일랜드) + 휴대폰 충전 USB 콘센트	8,250,000	825,000	7,425,000	
		기본	여닫이 상부장 + 일반 아일랜드 하부장 + 타일(벽:300x600) + MMA(상판,아일랜드)	-	-	-	
	84D, 84E, 84F	유상	유리 플랩 상부장 + 가구FIX 판넬 + 대형 아일랜드 하부장 + 엔지니어드스톤(벽,상판,아일랜드) + 아일랜드 각도 조절형 조명 1EA + 휴대폰 충전 USB 콘센트	7,700,000	770,000	6,930,000	
		기본	여닫이 상부장 + 벽지 마감 + 일반 아일랜드 하부장 + 타일(벽:300x600) + MMA(상판,아일랜드) + 아일랜드 매입 조명 1EA	-	-	-	

※ 주방특화(주방 스타일업)관련 추가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주방 특화 추가선택품목은 인테리어 통합 패키지 옵션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미 선택시 상부장 하부의 조명이 축소되며, 스위치의 사양이 변경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휴대폰 충전 USB 콘센트 방수기능이 없는 제품으로 콘센트 주변에 물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디테일, 색상, 설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콘센트 설치로 인해 하부 수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평형별, 타입별 레이아웃 및 마감 컬러, 제품품목 등이 상이하므로 계약 전 각 타입별 품목 구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별도의 물척이 없으므로 사용시 물의 흘러내림 또는 물 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주방 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 시 연결부위 발생(세대별로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및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재의 특성상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계약자의 식탁 가구 배치 시 대형 아일랜드 하부장으로 인해 일부 타입의 경우 식탁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오목천역더리브.com>)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조명기구의 개별 위치 변경은 불가하며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적용 주택형	내용	공급금액	계약시(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드레스룸 도어 + 시스템 가구	84A, 84B (드레스룸2)	유상	슬라이딩 도어 + 벽 판넬형 시스템 가구 + 선반 조명 + 전신거울 + 다용도 액세서리 걸이	4,290,000	429,000	3,861,000	- [드레스룸2]에만 해당 - [드레스룸1] 추가선택 해당사항 없음
		기본	가구 도어 + 미설치	-	-	-	
	84C	유상	슬라이딩 도어 + 벽 판넬형 시스템 가구 + 선반 조명 + 전신거울 + 아트월 타일 복도연장	4,400,000	440,000	3,960,000	- 팬트리2(복도) 통합형 : 드레스룸 확장
		기본	가구 도어 + 일반형 시스템 선반	-	-	-	- 팬트리2(복도) 분리형
	84D, 84E, 84F	유상	슬라이딩 도어 + 벽 판넬형 시스템 가구 + 선반 조명 + 전신거울 + 다용도 액세서리 걸이	3,630,000	363,000	3,267,000	
		기본	가구 도어 + 일반형 시스템 가구 + 전신거울	-	-	-	

※ 드레스룸 특화 추가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본 공사 시 각종 가구 및 도어의 손잡이, 하드웨어, 레일, 액세서리 등의 디테일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레이아웃에 따라 가구의 길이, 구성, 디자인, 위치는 상이할 수 있으며, 각 타입별 추가선택품목 관련 항목을 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는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파손될 수 있습니다.
- 슬라이딩 도어 특성상 개폐 시 벽체에서 돌출될 수 있으며, 벽과의 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돌출 사이즈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84A, 84B 타입의 경우 [드레스룸2]에 추가선택품목이 적용되며, 미선택 시 해당 실 내에는 시스템가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일반 가구도어만 설치)
- 84A, 84B 타입의 [드레스룸1]에 기본형 가구 도어와 일반형 시스템 가구가 기본으로 설치되고, 별도 추가선택 품목이 없으며, 천장에 원형 센서등이 설치됩니다.
- 84C 타입은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팬트리2(복도)와 통합되어 드레스룸이 확장 시공됩니다. 미선택 시 팬트리2(복도) 분리형으로 드레스룸과 별도의 벽지로 시공됩니다.
- 해당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가구 설치 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바닥, 벽,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해당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기본형 마감의 마루, 벽지 및 천장지로 시공됩니다.
- 타입별로 가구의 구성과 위치가 상이하므로 계약 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납성 개선 및 시공상의 이유로 인해 가구의 크기 및 구성, 하드웨어 사양, 마감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판넬형 시스템가구에 과도한 중량물(의류제외) 적재 시 파손 및 판넬 탈락 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시스템가구는 의류보관용으로 과도한 적재물 적치를 금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 추가선택품목 선택 관련 내용 및 유의사항을 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과 관련된 분쟁, 다툼 그리고 공사 중 또는 입주 후 민원이나 이의제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 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설치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각 추가선택품목은 신청 계약세대(전체타입)가 총 10세대 이하일 경우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금액 및 물품 등 관련 세부사항은 사업주체에서 임의 결정된 금액이며, 분양승인대상(분양가 상한제 비대상)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사업주체가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주체와 별도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선택품목의 하자보수 의무는 본 공동주택 시공사가 아닌 사업주체에서 부담하며, 품목 및 진행 일정 등은 시공사와 일체 무관합니다.
- 전체 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적용되는 품목(무상설치형)의 공사비를 차감하고 산정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무상설치형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과세될 경우 수분양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오목천역더리브.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잔금(9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할 별도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패키지는 개별품목의 선택 및 계약이 불가하며, 해당 패키지는 모집공고 내 및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오목천역더리브.com>)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4항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하며, 미납시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공동주택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 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합니다.)
- 추가선택품목계약은 본 공동주택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공동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유상옵션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귀책으로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총 옵션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계약은 본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오목천역더리브.com>)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 또는 전체)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제조사와 모델은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제품 또는 자재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및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제조사의 신제품 출시, 향후 시장 동향, 개발 경과, 성능개선 등에 따라 모델명 및 제원 등의 변경된 경우 입주 시기에 생산되는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공급 및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과 유상옵션은 중복 선택할 수 없으며, 특히 추가선택품목은 인테리어 통합 패키지 옵션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선택 유무에 따라 제공되는 가구의 형태 및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기본으로 설치되는 수납공간이 미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일반가구 등의 가구 뒷면 및 바닥, 천장에는 바닥재 및 벽지, 천장지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설계도서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며,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오목천역더리브.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주택형별로 형태 및 사이즈, 내부 구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분양자 또는 입주자의 사용상 하자를 제외한 시공상의 하자는 사업주체가 관련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을 부담합니다.
- 가전기기에 관련한 문의 및 하자보수 요청은 해당 가전브랜드의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 경우 수분양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릅니다.

####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계약시 아래 계좌 입금 후 입금증 사업주체 제출[사업주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	------	------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선) 납부계좌	신한은행	140-010-181470	에스지씨이테크건설(주)
--------------------	------	----------------	--------------

- 유의사항
- 옵션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잔금(9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한 별도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선 선택품목 대금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상옵선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선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오목천역더리브.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선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선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선 선택품목은 공동주택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 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합니다.)
  - 유상옵선 선택품목계약은 본 공동주택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공동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유상옵선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유상옵선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귀책으로 유상옵선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총 옵션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상옵선 선택품목계약은 본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유상옵선 선택품목계약 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유상옵선 선택품목은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오목천역더리브.com>)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 또는 전체)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선택품목 (무상옵선)

품목	적용 주택형	내용		공급금액	비고
		선택 1	선택 2		
침실2, 침실3 가변형 벽체	전주택형	침실 분리형	침실 통합형	무상선택	- 선택1 : 사이버 견본주택84C 시공 - 선택2 : 사이버 견본주택84E 시공

-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오목천역더리브.com>) 84C타입은 선택1(침실 분리형)로 설치되었으며, 84E타입은 선택2(침실 통합형)로 설치되었습니다. 옵션 미 선택 시 침실2, 침실3은 선택1(침실 분리형)로 시공됩니다.
- 선택2(침실 통합형) 선택 시 출입문은 기본형과 동일하게 2개로 설치 됩니다.
- 기타선택품목의 선택에 따라 각 실의 벽지가 상이하오니, 계약 전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오목천역더리브.com>) 유니트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침실 통합형 선택 시 도어, 전기스위치, 콘센트는 침실 분리형과 동일합니다.

X

**단지어건 및 유의사항**

- ※ 일반사항, 단지어건,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오목천역더리브.com>), 계약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청약 전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팸플릿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여건에 관한 사항은 분양 계약 예정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각 단지의 입지, 세대별 층 또는 동-호수의 위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생활환경의 차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계약 예정자는 청약 및 최종 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본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과 관련된 분쟁, 다툼 그리고 공사중 또는 입주 후 민원이나 이의제기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내 용
면적	• 본 모집공고문의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본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구 분	내 용
	<p>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합니다.</li> <li>•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li> <li>• 일부 타입 세대의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면적이 합산되어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li> <li>•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며, 소수점 5째 자리에서 절사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단수정리 등에 따른 오차면적은 일부 세대에 할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li> <li>•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각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별도 경계구획 및 구분 등이 불가하여 이를 요구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및 준공 시 확정측량,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증강이 있을 때에는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공동주택 세대의 공용면적(계단실, 부대복리시설, 주차장, 단, 벽체공용면적은 제외)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합니다.</li> <li>•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전용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li> <li>• 본 공동주택은 용도별로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의 타 시설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 계획(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등)은 추후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면적 배분은 관련 법령 및 유사 법령의 기준으로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준공 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li>• 인허가 조건에 따라 사업부지 내 일부는 도로 확폭 및 차량 진출입 가감속차로 사용 또는 기부채납되어 사업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공동주택은 2022년 9월 15일 최초 건축허가완료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각종 친환경 인증 및 평가 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접수일 또는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li> <li>• 본 모집공고문의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본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li> <li>•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li> <li>• 각종 인증(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등)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등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이며, 실 적용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나 기술로 변경(설계변경 포함)될 수 있고, 적용 부위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시 인허가 협의 결과 또는 현장 공사 여건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전용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사항은 수분양자의 동의 또는 고지를 진행 후 평면 및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확장에 유무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 등으로 본 공사 시 발코니 실사용 면적 등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li> <li>• 구조 및 성능 개선 등을 위해 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용면적 및 서비스면적, 내부구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분양자의 실제 공급면적(주거공용면적, 계단실면적 등), 계약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 대지지분 및 전용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종 공용부 면적(계단실,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설비공간 등)은 본 공사시 현장 여건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동주택은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들의 요청, 입면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및</li> </ul>

구 분	내 용
	<p>사생활권 침해가 동·호수별 등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내·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하지 않습니다.</li> <li>• 구조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 향후 구조형식과 구조부재의(기둥, 보 등) 크기, 위치, 개수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층고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 {세대내, 외 및 공용부분(부대복리시설 포함)의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li> <li>• 본 사업부지 인근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에서 분양을 진행하거나 완료한 공동주택의 마감사양, 설치된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사이버 견본주택(<a href="http://www.오목천역더리브.com">http://www.오목천역더리브.com</a>) 및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li> <li>•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형오시설 유무, 도로, 일조, 진입로, 냄새 유발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등),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li>• 일부세대는 시공 개선 및 품질 관리를 위한 현장 내 공사용 사이버 견본주택(<a href="http://www.오목천역더리브.com">http://www.오목천역더리브.com</a>)세대(목업)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동주택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li> <li>•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또는 해당 민원으로 인한 행정관청의 공사중단, 권고 등으로 시공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조정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기관에 대해서는 지체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li> </ul>
계약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연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li> <li>•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li> <li>•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중도금 대출,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li> <li>• 당첨 및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li> <li>•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에 의거 해약 조치되며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li> <li>•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li> <li>• 계약자는 분양안내, 유의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li> <li>• 계약자가 공급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공급계약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전국일간지에 분실공고를 내고 2주일 후 공증 받은 위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인강증명서, 인강도장 등을 지참하고 사이버 견본주택(<a href="http://www.오목천역더리브.com">http://www.오목천역더리브.com</a>) 또는 사업주체를 방문하여 사업관계자 (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 소정의 양식에 따른 분실각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 할 시에만 공급계약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단, 공급계약서 재발급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li> <li>•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사업주체+계약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li> <li>•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li> <li>- 외국인이 상속·경매 등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고,</li> <li>-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li> </ul> </li> </ul>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li> <li>•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li> <li>• 취득세는 납부원인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계약 체결 시 사이버 견본주택(<a href="http://www.오목천역더리브.com">http://www.오목천역더리브.com</a>), 평면도, 배치도 및 사업지 주변현황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li> <li>•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및 공법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의 협의 및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분양대행사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대행사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의 결정에 따르며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변경시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li> <li>•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li> <li>•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li> <li>•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공사 중 일부 세대 또는 부대복리시설 전체 또는 일부는 현장사무실 및 창고, 샘플실 등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입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 또는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li> <li>•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li> <li>•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li> <li>• 입주지정기간(공사도중) 전 세대내 무단촬영 및 세대내부의 임의적인 촬영을 금지하며, 무단 촬영물의 유포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li> </ul>
<p>사이버 견본주택/홍보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홍보를 위한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이버 견본주택(<a href="http://www.오목천역더리브.com">http://www.오목천역더리브.com</a>)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카탈로그 및 사이버 견본주택(<a href="http://www.오목천역더리브.com">http://www.오목천역더리브.com</a>)에 표현된 단위세대 평면 등에 표현된 실의 규모 관련 치수 또는 면적 등은 제작 시에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주체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li> <li>• 사이버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li> <li>• 사이버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책상, 의자 등), 생활가전류(소형가전, TV, 밥솥,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간접등 등)는 연출용 전시품입니다.</li> <li>• 사이버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세대의 경우 계약 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일부 마감재 및 가구구성, 가구길이, 가구색상의 조합 등 사이버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다른 사항은 사업주체에 비치된 설계도서, 카탈로그 또는 모형 등을 확인 및 숙지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사이버 견본주택 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 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 용량, 탐승위치 등)은 사용승인 또는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됩니다.</li> <li>• 사이버 견본주택 에 설치된 조명,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맞게 설치됩니다.(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용 소방시설임)</li> <li>• 사이버 견본주택 에 설치된 외부 조경, 천장에 설치된 전시조명 및 CCTV, 스팟 조명 등은 전시 및 사이버 견본주택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사이버 견본주택 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사이버 견본주택 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전한 뒤 입주 전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li> <li>• 사이버 견본주택 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li> </ul>

구 분	내 용
	<p>개시에 따라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홍보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개발계획 및 각종시설(학교, 도로, 완충녹지, 공원 등)의 조성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에 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모형 및 카탈로그에 표현된 조감도, 투시도, 평면도, 배치도, 조명, 조경, 시설물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시공 시 구조 등의 안전성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사이버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연출용 설비 배관, 배선포함),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사이버 견본주택 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 발코니 확장 및 확장 시 포함품목은 별도 계약사항으로 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본 공사 시 사이버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한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사이버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단지모형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등)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조명, 식재,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옥탑부 디자인, 주동/창호형태, 벽체마감, 디테일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사이버 견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 공사 시 설계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됩니다.</li> <li>• 사이버 견본주택 에 제시된 창호(유리, 프레임)의 강도는 본 공사 시 층수 및 위치에 따라 바람에 의한 영향의 차이로 인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사이버 견본주택 에 설치된 배치도, 평면도 및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 공사 시 설치될 필요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으며 모형 및 홍보용 카탈로그에 표현된 내용(배치, 구획면적, 부대시설, 드라이에어리어(DA), 한전패드,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레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분양 홍보물 및 모형에 표현된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p>기부채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허가 조건에 따라 사업부지 내 일부는 도로 확폭 및 차량 진출입 가감속차로 사용 또는 기부채납되어 사업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기부채납 도로 등 기반시설은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정과의 협의에 따라 계획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사업부지 남서측 차량출입구의 도로에 면한 대지 일부는 주차장 진입을 위한 감속차로 확보(폭 약 3m / 길이 약 30m)를 위하여 보도 및 차도로 조성되며, 기부채납 되지 않으므로 수분양자의 비용으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합니다.</li> <li>• 본 사업부지 남동측 도로에 면한 대지 일부는 버스정류장 조성(폭 약 3m / 길이 약 35m)을 위하여 보도 및 차도로 조성되며, 기부채납 되지 않으므로 수분양자의 비용으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합니다.</li> <li>• 본 사업부지 남서측 감속차로 및 남동측 버스정류장은 인허가청 및 도로관리청 등의 개발 및 유지관리 계획 등에 따라 운영되어 임의로 변경, 보수, 폐쇄 등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수분양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li> </ul>
<p>단지 외부 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의 주변 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남측에는 폭 약 10m의 도로가 설치됩니다.</li> <li>• 단지 남측 도로에는 교차로(삼거리)가 설치됩니다.</li> <li>• 단지 북측에는 폭 약 30m의 도로가 설치됩니다.</li> <li>• 단지 동측 및 서측은 단지화 도로 또는 인접대지간 레벨차이로 인하여, 단지화 도로간 계단 또는 경사로, 석축 또는 옹벽, 화단 등이 설치되어 단지 내 출입이 제한 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남측 도로는 높이 약 1.2m 차이의 경사가 있으며, 해당 도로 이용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북측 도로는 높이 약 1m 차이의 경사가 있으며, 해당 도로 이용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남서측에는 차량 진출입 편의를 위한 가감속차로가 설치됩니다.</li> <li>• 단지 내 남동측에는는 지역주민을 위한 버스정류장이 설치됩니다.</li> <li>•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매연으로 인하여 환경성 및 사생활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주차구획, 주차 진출입구, 자전거주차장 등은 건축 인허가에 의하여 결정 된 사항입니다.</li> <li>• 단지 북측 보도에는 현재 자전거도로 및 식재플랜터가 설치되어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야차단 및 접근성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남측 보도에는 현재 안전휀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야차단 및 접근성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p>주변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동측에는 약 4층 이하 규모의 상가 및 주택 등이 위치하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조망, 교통체증 등의 환경성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서측에는 약 3층 이하 규모의 음식점과 주유소 등이 위치하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조망, 교통체증 등의 환경성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거나 폭발 및 화재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남측에는 약 4층 이하 규모의 상가 및 주택 등이 위치하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조망, 교통체증 등의 환경성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ul>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남측에는 약 15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등이 위치하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조망, 교통체증 등의 환경성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남측에는 약 300m 이내에 수인분당선 오목천역이 위치하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조망, 교통체증 등의 환경성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북측에는 약 5층 이하 규모의 상가 및 주택 등이 위치하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조망, 교통체증 등의 환경성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북측에는 약 24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등이 위치하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조망, 교통체증 등의 환경성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북측에는 약 200m 이내에 오목호수공원이 위치하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조망, 교통체증 등의 환경성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본 사업부지는 비행안전제6구역(전술)에 속해 있으며, 이로 인한 전투기 등의 소음이 수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대지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북측은 단지와 도로간 레벨차이로 인하여 경사로가 설치됩니다.</li> <li>• 단지 남측은 단지와 인접대지간 레벨차이로 인하여 경사로가 설치됩니다.</li> <li>• 단지 동측과 서측은 단지와 인접대지간 레벨차이 등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옹벽 또는 담장, 법면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 시 본 단지와 주변도로 및 인접대지간의 레벨차이 또는 현장여건 등에 의하여 구배, 계단 및 경사로, 석축 및 옹벽, 법면 등이 설치되거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북/남측에는 약 10m 높이의 전신주 및 전선이 위치하며 공동주택 2층 이하 높이에서는 이로 인한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오현초등학교입니다.</li> <li>• 중학교는 오목내중학구(영신중)에 해당됩니다.</li> <li>• 고등학교는 수원시 기존학교에 배치 가능하며, 수원 관내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포함)는 경기도 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의거 평준화 지역 배정 방법을 따릅니다.</li> </ul>
단지 내부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 도로 및 조경선, 조경공사, 건물외벽 마감공사 등을 포함한 단지 공사,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인·허가 과정이나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고,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각종 평가(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한 내용 중 본 사업과 관련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 단지의 건축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동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단지 내 타용도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li> <li>• 단지 배치 상 동별, 향별, 층별, 라인별 차이 또는 계약체결 이후 주변의 신축, 재건축 및 증축 등의 경우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상이하거나 침해당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상이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조경 등 시설물에 인접한 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시설물 및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과 제연을 위한 시설물(DA, 배기구 등)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및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악취, 조명 등에 의해 사생활권 및 환경권과 조망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단지 지상1층에는 북측과 남측을 연결하는 중앙보행통로 2개소, 동측과 서측을 연결하는 보행통로가 설치되며 단지 특성상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합니다.</li> <li>• 본 단지 내 지상1층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중앙보행통로(보행통로 포함) 및 포장면은 구배처리 또는 경사로가 설치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계단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단지의 중앙보행통로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각 주동 출입구로 진입할 수 있으며, 단지 특성상 공동주택 입주자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입주자 및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합니다.</li> <li>• 동 출입구(필로티 포함)(추가)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폭, 높이)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li> <li>• 동 출입구 인근 세대와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시설물의 통행 및 사용, 단지 내 조명 등으로 인하여 소음, 눈부심,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적 영향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지상2층 101동 4호라인 일부, 102동 4호라인 일부, 103동 3호라인에는 필로티가 설치됩니다.</li> <li>• 지상2층 필로티는 해당 동의 출입구 및 옥상정원과 주민공동시설 등의 통행로로 이용되며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필로티 상부의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간섭 및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와 필로티 상부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지상1층 중앙보행통로 및 복도는 해당 동의 출입구 및 공공의 통행로 및 자전거 보관소로 이용되며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1층 및 지상1층에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이 계획됨에 따라 공동주택 저층부 및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악취, 조명 등에 의해 사생활권 및 환경권과 조망권의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차장 외 단지내에는 별도의 차량 출입 및 이동은 불가합니다.</li> <li>• 단지 내 지상1층 상가 전면 공간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비상시 소방차 정차 공간이 설치 및 표기될 수 있으며 임의로 위치 이동 및 제거, 물건적치 등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li> <li>• 지상2층 세대 전면에는 비상시 공기안전매트가 설치되며, 임의로 시설물 설치, 물건적치, 공간 점유, 식재 등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li> <li>• 입주 시 단지 내 보차도 바닥 마감, 조경, 세대의 층수, 창호형태 및 크기, 평면 형태, 입면 장식, 돌출발코니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li> <li>•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의 제원에 따라 운반 가능한 이삿짐의 크기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준공 시 소음 측정으로 인해 도로에 면한 면 또는 일부 방음벽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li> </ul>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번호는 향후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호수의 표기 또한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공동주택 축벽 등에 표기 또는 설치된 로고의 디자인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li> <li>•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도시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및 경관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현장여건,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외부 벽체에는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현장여건에 따라 마감재 두께 및 주동 저층부 외부 마감재(석재 등) 적용 구간에 해당하는 세대의 창호사이즈는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환경디자인 개선을 위해 주동 및 공용부 입면 일부 구간에 재료(유리 포함)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동 저층부 2개층의 외벽 중 축벽(필로티 외측 벽면 포함, 필로티 내측 벽면과 계단실, 공용홀 제외)은 석재마감, 그 외의 벽체는 석재뿔칠 마감이 적용됩니다.</li> <li>• 본 공사 시 시공여건 고려 혹은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색상, 옥상장식물,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디자인, 지하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DA, 옹벽 등), 조경디자인(식재계획, 조경 바닥 디자인 등), 단지 사인 및 조명(단지 B사인물 포함), 주차장 구조체 공법(DECK PLATE 등) 등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공법 등이 부위별로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일부 입주자의 개인 취향 및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없습니다.</li> </ul>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전거 보관소는 지상1층에 공동주택 주출입구 인근에 설치되며,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합니다.</li> <li>•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우편함은 각 동 1층에 설치되며, 우편함의 위치, 디자인,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동별 1개소 총 3개소 설치되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해 RFID수거함이 설치됩니다.</li> <li>• 지상1층 101동과 103동 주출입구 인근에 공동주택 재활용품 보관소가 각 1개소씩 총 2개소 설치됩니다.</li> <li>•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재활용품 보관소 이용에 관련하여 필요시 입주 후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간의 협의에 따라 사용 방법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재활용품 보관소 인접한 주동의 세대와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냄새, 해충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지상2층 옥상정원에는 휴게정원 및 썬지킴터가 5개소가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101동 4호 라인 측면, 101동 1호 및 4호 라인 배면, 101 1호 및 102동 4호 라인 측면, 102동 2호 라인 전면, 103동 2호 및 3호 라인 전면에 설치됩니다.</li> <li>• 휴게정원 및 썬지킴터와 인접한 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옥상정원 및 시설물과 이를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각종 공해(소음, 진동, 빛, 악취, 해충 등) 발생 및 사생활권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경시설물은 분양관련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의 이미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조경 식재 부분과 인접한 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해충침입, 악취발생, 환기, 채광 및 조망 불량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조경 및 수경시설 등의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 유지, 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 내 조경 및 수경시설, 조경수 등은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 또는 식재 여부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배치 및 설계상 일부 시각적 간섭 및 공용시설 조명에 의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옹벽,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사생활, 조망, 일조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구 분	내 용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용 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아 해당구간의 저층세대의 환경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건물은 복합시설로 지하1층~지하3층에 주차장을 계획하고 용도별로 동선을 분리하여 사용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원활한 교통통제 및 운영을 위하여 혼용하여 이용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주차장은 지하1층~지하3층에 계획하였으며, 지하1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과 공동으로 사용되나 차단기로 주차공간이 구획되어 운영됩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지하주차장 사용구획 및 주차대수가 변경 될 수 있으니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li> <li>• 본 건물은 복합시설로 단지 주차장 설계 및 운영 계획에 따라 타용도와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타용도의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단지 복합시설로 지하주차장의 면적은 각 용도별 계획주차대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으며, 사용상 편의를 위하여 지하1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과 공동주택, 지하2층~지하3층은 공동주택 용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주차장 이용에 제한을 주거나 개별적인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li> <li>•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 201대의 127%인 257대(지하 257대)이며, 일반형, 확장형, 경차, 장애인, 전기차, 교통약자 주차가 혼재되어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에 계획된 차고는 주차장에 부속된 공용차고로 입주인 개인의 차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의 평면 계획에 따라 주차대수의 배분은 주동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일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 등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 또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 지하주차장과 공용부 통로 공간 및 계단실, 외벽, 구조물 등은 비난방·비단열공간으로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의 유효높이 확보를 위하여 일부 기둥, 보와 같은 구조체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에는 높이 2.7m 차량은 지하1층에만 진출입이 가능하며, 높이 2.3m 미만의 차량은 전 층 출입이 가능 하오니 이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주차공간은 높이 2.3m 미만의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며, 일부구간은 건축물의 구조 및 기계, 전기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높이 2.1m 미만의 차량만 주차 가능하도록 천정고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주차램프에 인접한 저층세대 및 맞은편 세대는 차량불빛, 소음, 진동 등에 따른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주동별로 주차장 이용거리와 동선이 상이하여 불편이 따를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모형 및 도서를 통하여 동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li> <li>• 전기차 충전설비는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ul>
부대복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부대복리시설)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시설이며, 용도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등에 따라 이용에 제한을 주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단지 내 부대시설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생활폐기물보관시설, 자전거 보관대, 등이 설치되고, 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입주인 회의실, 독서실이 설치되며, 일체의 운영 및 보안, 유지 관리는 입주인 자치적으로 하여야합니다</li> <li>• 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li> <li>• 관리사무소, 입주인회의실, 독서실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의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에서 시공하며, 가구 및 가전, 소모집기 및 비품, 운동기구, 인테리어 마감 등은 별도 제공 또는 설치되지 않으므로 입주 후 입주인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합니다.</li> <li>• 복리시설 중 입주인회의실, 주민운동시설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등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위한 입주인공동시설로써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간 협의에 따라 타용도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이용에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li> <li>• 사업주체에서 “분양관련 서비스지원품목(커뮤니티시설 내부시설물, 냉난방기기, 집기류)”을 별도로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거나 또는 관리사무소 선정 후 동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 서비스지원품목 일체가 인수인계되며 이에 대한 관리 및 유지, 보수책임은 인수자(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게 있으며, 이“분양관련 서비스지원품목”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별도의 하자보수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li> <li>• 주민운동시설은 101동 지상 2층 4호 라인에 계획되어 있으며, 세대별 및 동별 위치 및 용도에 따른 거리에 따라 접근동선이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li> <li>• 입주인회의실은 102동 지상 2층 4호 라인에 계획되어 있으며, 세대별 및 동별 위치 및 용도에 따른 거리에 따라 접근동선이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li> <li>• 독서실은 101동 지상2층 1호 라인에 계획되어 있으며, 세대별 및 동별 위치 및 용도에 따른 거리에 따라 접근동선이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li> <li>• 관리사무소는 102동 지상2층 1호 라인에 계획되어 있으며, 세대별 및 동별 위치 및 용도에 따른 거리에 따라 접근동선이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li> <li>• 어린이 놀이터는 101동 1호 및 2호라인과 102동 3호 및 4호 라인 전면에 계획되어 있으며, 세대별 및 동별 위치 및 용도에 따른 거리에 따라 접근동선이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 및 기타 시설물의 설치로 인접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일조, 조망, 소음, 진동, 눈부심, 냄새, 해충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의 냉방 실외기, 환기시설 등은 해당시설 외부 설치 또는 외기를 향하여 설치되며, 인접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 후에도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공간으로 일정기간 운영한 뒤 향후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변경할 계획이며, 그로 인해 일정기간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li> </ul>

구 분	내 용
근린생활 시설 및 업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의 외관 및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단지 특성상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입점자 및 사용자가 단지 및 공용부에 접근 내지 사용이 가능합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층과 지하 1층, 업무시설은 지하1층에 설치되며, 시설 이용자 및 입점업종에 따른 조명, 소음,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하여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인접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일조, 조망, 소음, 진동, 냄새, 해충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li> </ul>
공용설비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사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가스정압시설 및 전기변압시설 등의 시설물이 입주자 동의 없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가스배관은 건물 외부에 설치되며, 설치 계획에 따라 내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지붕, 옥탑층 및 측벽에는 의장용 구조물, 태양광 구조물, 안테나, 이동통신중계기, 피뢰침, 경관조명 및 시행자 또는 시공사 BI 사인물 등이 설치되거나 또는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 또는 최상층 세대는 소음, 눈부심, 환경적 영향 및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비용은 전체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 내 조경식재, 야간조명, 홈네트워킹 등 단지 내 공용설비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후 관리 규약에 따릅니다.</li> <li>• 본 단지는 복합시설로 공동주택(주거), 근린생활시설(비주거), 업무시설(비주거)의 전기실, 기계실, MDF실은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로 각각 설치 운영됩니다.</li> <li>• 본 단지는 복합시설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의 중앙감시장비 (홈네트워크, 원격감침, 주차관제, 비상벨, CCTV, HEAD END, 태양광발전, 전기차 충전설비, 승강기 감시반등)는 지하1층 방재실에 각 시스템별로 통합 구성합니다.</li> <li>• 지하 및 지상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제연실 포함) 및 정화조, 제연 및 환기용 DA탑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정화조는 지하3층 101동 인근에 위치하여 인접한 101동의 옥상층에 정화조 배기덕트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의 계단실의 형태는 전용면적이 동일하더라도 동 형태 및 층수 등에 따라 설비PD,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의 형태 및 면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별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해당 동에 따라 각각 다르고, 외부에 면하는 일부 환기창에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수동으로 개폐시 사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엘리베이터는 동당 2대(단 103동은 코어별 1대 설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li> <li>• 엘리베이터 운행시 인접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모형 및 도서를 통하여 엘리베이터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각 세대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물건을 적치하거나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ul>
단위세대	<p>일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호수에 따라 카달로그 또는 사이버 견본주택 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li> <li>• 타입별, 동호수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위세대 실내 천정 높이는 기본 2.3m, 우물천정 구간은 2.4m이며, 실외기실, 발코니 부분과 욕실 등은 상이합니다.</li> <li>• 단위세대 현관 및 실외기실, 발코니의 경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여도 비난방, 비단열 공간이며 별도의 천장마감이 없습니다.</li> <li>• 단위세대 안목치수 산정 시 기본형평면을 적용하며, 옵션마감재, 벽체, 걸레받이, 천장몰딩 등은 제외하여 산정합니다.</li> <li>• 이웃세대(상하좌우)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바닥, 천장, 벽체 등이 변경되거나 돌출될 수 있습니다.</li> <li>• 상부세대 욕실배관이 하부세대 욕실 천장속에 설치되며, 상부세대 욕실배관 보수 시 하부세대는 협조하여야 합니다.</li> <li>•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욕실문 개폐 시 신발걸림은 하자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li> <li>• 세대 내 욕실의 천장 높이는 현장 여건(단열재 설치, 위생배관 설치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검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5호)을 준수하며 법적 기준 이내의 층간소음 및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 내 우물천장 형태, 커튼박스의 위치, 크기, 높이 및 형태는 천장내부의 설비 및 배관 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에 따라 설치되는 등기구의 위치 및 콘센트, 스위치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평형별 추가선택품목과 기본선택마감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각 평형별 추가선택품목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추가선택품목사항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ul>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셔야하며, 특히 입주 후 첫해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 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 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는 시공 상의 하자가 아니며,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li> <li>• 계약자는 세대 각 실 및 발코니 외부 창호에 설치된 난간대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전입, 전출, 이사 시 이삿짐 장비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이삿짐 등은 해당 동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이사 중 파손시 원상복구), 불가피하게 난간대 설치 구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필히 난간대에 보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li> </ul>
발코니/ 실외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세대별 발코니로 인한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li> <li>• 본 단지는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른 추가 단열공사 시 비확장 세대측에 우선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며, 이로 인하여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및 실내 공간 등 일부 구간의 바닥, 벽체, 천장 일부가 돌출, 단차, 높이 및 폭 축소,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내부 공간 축소 등 사용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의 발코니에는 투시형 난간 또는 발코니전용 단창이 설치됩니다.</li> <li>• 공동주택 발코니 내 세탁기 설치 등으로 인한 단차 발생구간은 낙상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배수구 또는 선홍통이 설치되지 않거나 위치와 수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에서는 이 미설치 되어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 발코니에는 결로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하며, 겨울철 수도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li> <li>• 에어컨 실외기 사이즈에 따라 실외기실 내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외부에 별도 설치가 불가하오니 구매 전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세대 내 에어컨 작동 시 실외기실 그릴창의 방충망을 닫고 사용 하는 경우에는, 냉방 성능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에어컨 작동 시 실외기실 그릴창의 그릴을 개방하여 사용해야 하며, 폐쇄한 상태로 작동 시 냉방성능 저하, 고장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li> <li>•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 및 보일러실에 보일러와 수전 및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창문 또는 그릴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li> <li>• 화재 등 유사시에는 세대 내 일부 발코니의 인접세대 경계벽에는 화재 등 유사시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의 벽체 또는 피난구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발코니의 사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피난구 상부 덮개로 인한 소음 및 방법에 유의하시고, 하향식 피난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장물의 적치, 임의변경 등 피난활동에 제약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li> <li>• 하향식 피난구는 층별로 교차되어 시공되며, 피난구 커버에는 타일이 시공되지않아 발코니 바닥 및 천정에 제품의 마감면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하부 세대로 누수위험이 있으므로 물 사용이 불가합니다.</li> <li>• 하향식 피난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시 대피를 위한 시설로 덮개를 열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으며, 하향식 피난구 덮개를 밝거나 덮개 위로 물이 넘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세대 내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 등은 비상시 피난하는 공간으로 입주 후 임의 훼손, 변경 및 제거, 물건적재 및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상 3층 이하의 세대는 설계 계획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손잡이 개폐방식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침실문과 욕실문에 손끼임 방지장치가 설치되며, 제품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철재문 및 방화문류의 설치 위치, 크기, 형태, 디테일은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공동주택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실별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설치되는 창호의 유리 및 손잡이의 형태, 열림 방향, 색상, 제조사 등은 본 공사 시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실외기실 그릴창 프레임 및 날개 등은 금속성 재질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므로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가 아니며 입주자가 관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li> <li>• 본 공사 시 목창호, 문틀 및 가구 등에 타카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li> </ul>
가구/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가구 뒷면, 바닥, 천정 등)에는 별도의 마감재(마루, 타일, 도배지 등)가 시공되지 않습니다.</li> <li>•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의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li> <li>• 주방가구와 접하는 상부, 하부, 후면, 측면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li> </ul>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 내 설치되는 가구 악세사리, 한지 등의 가구철물은 제품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가스미터기 설치 위치에 따라서 선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이버 견본주택 과 상이하게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li> <li>•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의 마감은 설치 후 시간경과에 따라 노후화가 발생되며, 자외선 및 각종 세제, 화학약품 등에 의해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 84A, 84B 타입은 주방배치 계획상 4인용을 초과하는 식탁 설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유의하여 식탁 설치공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li> <li>• 세대 내 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공간계획은 일반적인 사이즈로 계획하였으나 규격 등의 차이로 인해 돌출 되거나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반드시 실제 크기를 확인해야 합니다.</li> <li>• 주방에 설치된 아일랜드장은 위치를 옮길 경우 전기 배관 및 전선이 바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주방의 기본사양 가전류 외 고품량 가전제품(전기인덕션 등)의 추가 설치에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주방 렌지후드 부근 천장내에 소방 관련 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그로 인해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또한 자동식소화기 및 점검구의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 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거실의 아트월 설치 및 복도 등의 벽체의 마감 두께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길이는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천장의 올림공간(우물천정)의 천정고는 천장 내부의 해당 세대 및 상부층 세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다소 축소 또는 확대 되어 시공 되어질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해당 세대 및 상부층 세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다소 축소 또는 확대 되어 시공 되어질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화장실(샤워부스 포함),현관 등의 단차 및 타일 줄눈의 모양 및 크기는 사이버 견본주택 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li> <li>• 내부마감재(마루재, 타일, 도배지, 시트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 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li> <li>•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 발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li> <li>•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표면결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이버 견본주택 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마감재의 나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li> <li>•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생산일자, 생산공장(지)에 따라 이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 발코니는 벽, 천장은 도장으로 시공되며, 포인트 컬러 벽의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사이버 견본주택 및 모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사이버 견본주택 을 우선으로 함)</li> </ul>
전기/기계/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단지는 개별난방 방식입니다.</li> <li>• 본 공사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위 실별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창호 및 외기노출벽면 마감재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li> <li>• 발코니 및 실외기, 보일러, 전열교환기, 실외기 등이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li> <li>•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및 실외기 보일러실에는 등에 전열교환기 덕트, 스프링클러 배관 등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임의로 철거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li> <li>• 발코니(실외기실, 세탁실 포함)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사양, 위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 되었으며, 물 사용시 배수가 불가하거나, 하부층으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84A,B 보일러실에는 환기용 개구부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개소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침실1(안방)내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물 사용 및 청소가 불가하고 청소수전이 미설치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84A, 84B type 세탁실, 84C, 84D, 84E, 84F 발코니2(주방 옆)에 세탁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됩니다. 단 해당 발코니를 제외하고 별도의 수전은 설치되지 않으며, 실외기실 내 배수설비만 설치됩니다.</li> </ul>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 내 손빨래 수전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단위호실 욕실 내 배기는 직접배기방식으로 설치되며, 그로인해 일부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욕실 천장내부에 상부층용 급수, 급탕 분배기가 설치됩니다. 또한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사이버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전기기구(홀네트워크, 조명기구, 조명스위치, 콘센트 등) 설치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사이버 견본주택 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사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li> <li>• 세대 내 전기분전반/통신단자함의 설치 위치 및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된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위세대의 환기시스템은 사이버 견본주택 에 설치된 전열교환장치 또는 동등이상의 사양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 및 사양,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본 공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 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욕실 내 샤워부스바닥과 욕조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li> </ul>
유상옵션	공동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유상옵션 및 선택제에 따라 설치되는 등기구의 위치 및 콘센트, 스위치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XI**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표시**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표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적용여부	적용내용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열조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환경부장관 고시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단위: 원, VAT별도)

구분	건축		전기,소방 및 정보통신
회사명	백건축그룹 건축사사무소(주)	(주)채환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우보엔지니어링
감리금액	520,000,000	200,000,000	610,000,000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책임준공 분양형(혼합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 매수인은 본 건축물이 매도인 겸 수탁자 신한자산신탁(주), 시공사인 에스지씨이테크건설(주) 및 위탁자 겸 수익자인 원앤원종합개발(주) 간에 2022년 11월 09일 책임준공 분양형(혼합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여 진행되는 책임준공 분양형(혼합형) 토지신탁사업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본 특약사항의 내용이 분양 계약의 다른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인정합니다.

- 본 사업은 책임준공 분양형(혼합형)으로서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원앤원종합개발 주식회사)와 수탁자(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체결한 토지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으로 개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서의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수탁자(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분양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원앤원종합개발 주식회사)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된다.
- 매수인은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한다.
- 매수인은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사인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 에게 있으며 시공사 교체사유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건축물 브랜드·명칭 변경 포함) 교체시 매수인은 사전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분양계약 목적물은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겸 수탁자인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 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하자보수책임 등 시공사의 의무는 시공사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에게, 분양계약 해제(해지)시 분양대금 반환 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주식회사 원앤원종합개발 주식회사에게 있다.
- 매수인은 분양대금을 반드시 분양 계약서에서 명시한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분양대금수납계좌에 직접 입금하여야하며, 동 계좌로 입금(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 방식)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유효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는 형식적인 시행사로서 사업주체(건축주) 및 분양권자로서의 의무나 책임은 원앤원종합개발 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이의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아니한다.
-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정책(중도금대출 제한비용 강화, 담보대출 제한 등), 금융기관 미확보 등에 따라 중도금대출, 담보대출이 제한(축소)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축소), 대출불가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분양대금을 자기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주체(건축주)로서의 일체의 의무와 책임 및 분양광고 등 분양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의무와 책임은 원앤원종합개발 주식회사가 부담하며,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은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입은 손해 및 손실의 배상을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위탁자 원앤원종합개발 주식회사 및/또는 분양대행사(소속 임직원 포함)는 수탁자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의 승인없이 단독으로 또는 매수자(수분양자)와 합의하여 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본 분양계약의 내용·효력을 변경하거나 상실시키는 행위, 매수자(수분양자)의 분양대금·연체료·위약금 채무 등을 감면하는 행위, 매수자(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 등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 매수자(수분양자)에게 본 분양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본 분양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약속·확약하는 행위 등 일체를 할 수 없으며, 매수인(수분양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체결된 각종 개별계약(위탁자 및/또는 분양대행사와 수분양자간 임대확약, 수익보장, 계약해제합의, 환매확약, 할인분양, 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위탁자는 본 분양계약상 수탁자의 권한을행사하거나 수탁자를 대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한하여 수탁자를 대신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매수자(수분양자)가 본 분양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지체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매수자(수분양자)에 대한 이행최고 또는 위반사항 시정촉구 통지
  2. 매수자(수분양자)에 대한 본 분양목적물의 입주지정일(또는 입주지정기간) 통지
- 시공사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시공사를 대신하여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할 경우 분양계약서 상 입주예정일은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자동 연장되며, 수분양자는 이에 동의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본 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득한 주택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기관	보증금액	보증기간
01282023-104-0001200	주택도시보증공사	106,116,136,7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p><b>【공사】</b>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b>【주채무자】</b>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b>【주상복합주택】</b>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p> <p><b>【분양이행】</b>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p> <p><b>【환급이행】</b>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p><b>【대물변제】</b>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p> <p><b>【허위계약】</b>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p><b>【입주금】</b>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p>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충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충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훔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위탁사	시행수탁사(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원앤원종합개발 주식회사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9번길 17, 201호(오목천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3~6층. 13층(송암빌딩)
법인등록번호	110111-4860121	110111-3543801	110111-0327555

- 사업주체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9번길 17, 201호(오목천동)
- 분양 홈페이지 : <http://www.오목천역더리브.com>
- 분양 문의 : ☎031-296-7788

※ 청약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오목천역더리브.com>)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